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12. 9.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26일 김영진 의원 외 16인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26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04년 12월 9일
제110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강두석 의원)

가.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의 취지에 맞추어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함에 있어 적극 보호, 육성코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1조의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계승을 포함한다)"로 개정
○ 제2조제6호의 "전통문화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등을 말한다"를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찬재)

○ 우리구의 전통문화유산을 보면 상산군재, 당산동 부군당재, 방학곳지 부군당제, 도당제가 있으며 세시풍속으로는 정월대보름, 쥐불놀이가 있으나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구의 전문문화를 보호, 계승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에는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소액의 예산지원도 중단된 상태임.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제2항제3호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오랜 전통을 이어온 우리구의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이 위축될 위기에 있으므로 본 조례를 발의된 안과 같이 개정하여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을 진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1의 교육과목, 공연발표전시 란의 과목에 사물놀이, 풍물놀이도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요지
○ 전통문화예술 보호 및 계승의 진흥방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 별표1의 공연발표전시 과목(종목)란에 과목추가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연발표전시 과목(종목)란에 사물놀이, 풍물놀이를 추가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137호

제출년월일 : 2004. 12. 9.
제 출 자 : 이용주 의원

1. 수정이유

전통문화예술 보호 및 계승의 진흥방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연발표전시 과목(종목)란에 과목추가 수정

2. 주요내용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연발표전시 과목(종목)란에 사물놀이, 풍물놀이를 추가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연발표전시 과목(종목)란에 사물놀이, 풍물놀이를 추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체위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생활체육 활동 등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체위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전통문화 예술 보존 및 계승을 포함한다) 생활체육활동 등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전통문화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 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제6조(교육과목 등) 1. (생략) 2. (생략)	제6조(교육과목 등)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과목 등) 1. 개정안과 같으며, 별표1 공연발표전시 과목(종목)란에 사물놀이, 풍물놀이 추가. 2.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7

발의년월일 : 2004. 11. 26.
발 의 자 : 김영진 의원 외 16인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의 취지에 맞추어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함에 있어 적극 보호·육성코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계승을 포함한다)"로 개정
나. 제2조제6호의 "전통문화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집행부협의 : 이견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체위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계승을 포함한다) 생활체육활동 등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통문화"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재위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생활체육활동 등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문화예술(전통문화 예술 보존 및 계승을 포함한다)</u>…… ……
제2조(정의) 1. …… 2. …… 3. …… 4. …… 5. …… 6. <신설>	제2조(정의)6호 <u>"전통문화"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u>